경남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271호

2025년도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강화사업(R&D기획 지원) 공고(2차)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남도가 지원하는 '2025년도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R&D기획 지원 컨설팅을 추진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7월 23일
(재)경남테크노파크 원장

1 지원개요

○ **(지원목적)** 자체 연구개발 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획을 지원하여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자발적인 연구개발 기획 촉진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 두 가지를 만족하는 중소기업

①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 협약 기간 내 **본사를 경남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② 본 사업 협약 이후 2025년도 정부부처 R&D 지원사업 신청 예정인 중소기업

※ 지원연도 정부부처 R&D 지원 사업 신청 시 주관기업으로 신청해야 하며, 공공연구기관 및 타 기업과 공동컨소시엄으로 참여할 경우 세부 주관까지는 인정됨
※ 타 정부부처 기관 컨설팅(코칭), 바우처, 특허분석과제(IP나래, 지재권분쟁, IP R&D 등) 등의 과제 지원은 불인정

○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 2025. 11. 30.

○ **(지원규모)** 기업당 5,000천원 내외 / 2개사

○ **(신청방식)** 기업을 주관으로 하되, 기획기업 또는 전문가를 지정하여 신청

○ **(지원형태)**

- 예산편성은 지원범위 사용기준 내에서 자율적 편성
- 신청기업에서 선 지급 후 사후 정산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2025년 정부부처 R&D 공모과제 지원신청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기획(컨설팅)기관, 전문가 활용 비용 지원

지원 구분		지원내용	필요 제출서류
①	기획기업 활용 (컨설팅 기관)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타당성·시장성 조사 및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기획지원 등	기획기업 사업자등록증, 4대 보험 가입자명부
②	전문가 활용		전문가 프로필 (전문가 자격 기준 참고)

※ ①,② 중 택1 또는 모두 선택 가능(신청 사업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금액 편성)

○ **(지원범위)**

사업비 사용기준	비고
-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전문가 활용비 -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동향 조사보고서 구입비 -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기획기업" 위탁비 *기획기업: 정부 지원사업의 공통적인 목차에 근거하여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하는 기관	- 전문가 활용비 - 시장·기술 동향 조사 구입비 - 기획기업 위탁비 이외에 사업비 집행 불가

※ 기획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종목으로 경영컨설팅,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관련 유사종목이 반드시 명기 되어 있어야 하며, 관련성이 부족한 경우 사업비는 지급되지 않으며, 최종 결정은 평가위원회에서 이루어짐

3 평가내용

○ **(평가방법) 요건검토 → 발표평가**

- 요건검토: 신청기업의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검토
- 발표평가: 사업계획서 및 발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평가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필요성(10)	기획의 필요성	■ 개발기술의 기획 필요성
기술성·적정성·개발역량 (60)	기술의 차별성 및 구체성	■ 기획 기술의 차별성 및 독창성
		■ 기획 기술의 개발내용 및 방법의 구체성·타당성
	개발목표의 적정성	■ 기획 기술개발 목표 수준의 적정성
	기술의 개발역량	■ 기획 기술의 개발 역량
사업성(30)	사업화 가능성 (시장진입 가능성 포함)	■ 기획 기술의 시장 규모 및 목표시장의 타당성
		■ 기획 기술의 제품화 및 수출 가능성
	고용 친화도	■ 고용계획 및 효과(신규 고용 및 유지 계획)

4 추진일정 및 신청방법

절 차		주 체	일 정
①	사업공고 및 접수	경남테크노파크 누리집 (http://gntp.or.kr)	2025. 7. 23.~ 8. 6.
⇩			
②	신청기업 요건검토	경남테크노파크	접수일로 1주일 이내
⇩			
③	평가위원회 개최 (요건 충족기업 대상)	평가위원	2025. 8. 13.(예정)
⇩			
④	결과통보 및 협약체결	경남TP → 신청기업	접수일로 1주일 이내
⇩			
⑤	사업 수행	선정기업, 기획기업(또는 전문가)	협약일 ~ 11.30.
⇩			
⑥	중간 모니터링	경남TP	10월 초
⇩			
⑦	최종 결과물 및 보고서 제출	선정기업 → 경남TP	12월 초
⇩			
⑧	사업비 지급	경남TP →선정기업 (자격요건 충족 시)	제출일로 2주일 이내

○ **(접수기간)** 2025. 7. 23.(수) ~ 8. 6.(수)

○ **(접수방법)** (재)경남테크노파크 누리집 회원가입 후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 www.gntp.or.kr > 지원사업 > 사업신청 > 해당 공고 선택 >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목록		비고
필수 (주관기업)	① 사업계획서 1부		[서식 1]
	②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서식 2]
	③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서식 3]
	④ 청렴·성실의무이행·중복지원방지 서약서		[서식 4]
	⑤ 주관기업 사업자등록증		[서식 5]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공고기간내 발급본)		
	⑦ 주관기업 최근 2년간('23~'24년) 재무제표		
	⑧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이내)		
신청 프로그램	⑨ 기획기업 활용 경우	⑨-1 사업자등록증(업종, 업태 확인용)	
		⑨-2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공고기간내 발급본)	
	⑩ 전문가 활용 경우	⑩-1 연구자(전문가) 프로필(자유양식)	

※ 기획기업을 활용하는 경우 ⑨번의 서류제출, 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 ⑩번의 서류제출, 기획기업과 전문가를 모두 활용하는 경우 ⑨번과 ⑩번 서류 모두 제출 필요

○ **(문 의 처)** 문희라 선임(☎ 055-259-3621, moon@gntp.or.kr)

5 신청 및 제외사항

※ 신청 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 협약 이전에 신청 제한 또는 지원 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 제외 또는 지원취소 할 수 있음

▢ 주관기업 · 공동개발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업 및 공동 개발기관의 자격이 신청 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 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기 개발 및 지원 여부 검토

○ 신청과제가 이미 개발되었거나 타 사업을 통해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 기업이 과거에 지원받은 과제와 중복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이미 생산・판매・서비스 중인 제품・서비스이거나, 이에 대한 단순 성능개선(소폭 계량), 단순 조립 수준의 과제인 경우

○ 신청과제가 신제품 또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 또는 기존 제품・서비스의 고도화(기능 추가, 성능 계량 등)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 연구성 활동에 그치는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업, 주관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공동개발기관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업, 주관기업 대표자 및 과제 책임자, 공동 개발기관, 공동 개발기관 공동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협약 시작일부터 협약종료일까지 주관기업과 기획기업에 동시에 소속되어 있는 참여 인력을 포함한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업,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는 접수 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24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단, 아래의 기업의 부도, 휴·폐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 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인 업체,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기타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업,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접수된 신청서는 신청 기간 이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은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에 따름

○ 신청서류는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평가 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 **신청서류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 착오, 위·변조 및 누락, 지정 양식 이외 양식 사용 등의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